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오영주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중소기업기본법 개정 (의안번호 16193호, 정우택의원 대표발의)으로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 (종전 3년)됨에 따라 관련된 하위 법령을 개정 하려는 것임.

아울러, 중소기업기본법 상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취소 근거가 신설 (의안번호 제2122633호, 박영순의원 대표발의)됨에 따라 지정 취소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, ‘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’ 명칭을 ‘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플랫폼’으로 변경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가.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존속기업에게 인정되는 잔여 유예기간을 법 개정에 맞추어 확대

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문연구평가 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문연구평가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 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중 (2024.3.20~3.30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3. 22.~5. 1.) 진행

3) 행정규제 : 사전 규제심사 결과, 신설 규제 등 없음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3년”을 “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3의 제목 “(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)”을 “(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을 “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“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을 각각 “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4의 제목 “(통합관리시스템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)”을 “(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 중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을 각각 “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”으로 한다.

제1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평가기관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동안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의 신설 조항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,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개정 조항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예 제외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을 “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유예 제외)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	제9조(유예 제외) ----- ----- ----- --.
1.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<u>3년</u> 이 지난 경우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</u> -----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의3(<u>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</u>)	제10조의3(<u>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</u>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빅데이터 플랫폼(이하</u> <u>“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”</u> ----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<u>통합관리시스템(이하 “통합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</u> 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----- -----.

1. ~ 5. (생략)

② 중소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“중앙행정기관의 장등”이라 한다)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-----

-----.

④ (생략)

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.

제10조의4(통합관리시스템 전담 기구의 지정 및 운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(이하 “운영기관”이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
2. 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-----

-----.

-----.

제10조의4(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) ① -----

-----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.

1.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-----

2.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425